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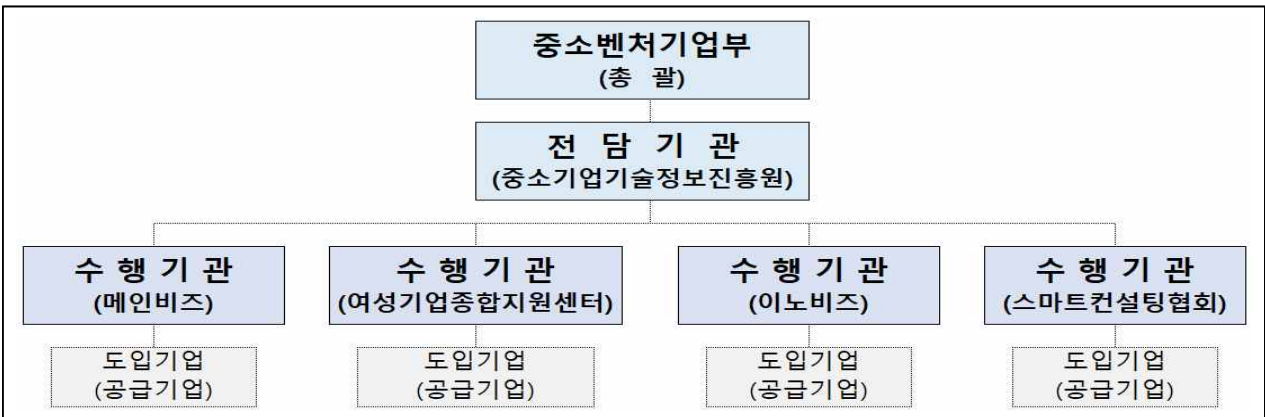
2025년 「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중소기업 서비스 혁신(스마트서비스화)을 위해 빅데이터, 인공지능(AI)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'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'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5년 4월 3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1. 사업 개요

- 사업목적 : 첨단ICT를 활용한 서비스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여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및 혁신을 촉진
 - 중소기업 서비스(비제조) 분야에 빅데이터·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, 고부가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 도모
-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지원근거 :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8조
- 지원규모 : 143개* 과제, 100억원 내외
 - * 신규 지원 118개 내외, 고도화 지원 25개 내외
- 추진체계 및 역할



- (전담기관) 사업 고도화 및 신규 지원사업 기획, 예·결산 및 사업 성과관리 등 지원프로그램의 세부설계 및 주무부처 정책기획 지원
- (수행기관) 현장수요 발굴, 코디네이터 지원, 과제평가·사후관리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행 및 우수성과 공유·확산을 위한 네트워킹 제공
 - * '24년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 역량, 전담조직 및 인력 등 보유 인프라, 참여기업 지원방안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4개 기관을 선정(사업기간 : '24~'26)
- (도입기업)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 지원사업을 수행
 - *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희망하여 사업참여 신청 후 수행·전담기관의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
- (공급기업) 도입기업과 컨소시엄 구성, 솔루션 구축 관련 사업계획서 작성 협력 및 이에 따른 솔루션 구축, 유지·보수 등 사후관리

2. 지원유형 및 지원내용

< 2025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지원분야 >

지원분야		지원 과제수	지원기간* (개월)	총사업비 내 정부지원 비중(%)	지원한도	비고
신규 지원	단독활용	110개 내외	6개월 (최대 8개월)	50% 이내	5천만원	
	공동활용	8개 내외	6개월 (최대 8개월)	50% 이내	2.5억원	
고도화 지원		25개 내외	6개월 (최대 8개월)	50% 이내	1억원	
코디네이터 지원		-	-	-	-	기획단계 (사전 컨설팅) 2회 내외

* 지원기간은 사업기간 연장 신청 등 협약변경을 통해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

※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, 공동활용 분야의 경우 지원수요 미달시 단독 활용 분야를 추가로 선정

- (신규 지원)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의 신규 개발 및 도입 비용 지원
 - (단독활용)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1개사가 사용할 솔루션 개발
 - ※ (지원대상 및 규모) 컨소시엄 /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50% 이내, 5천만원 한도
 - (공동활용) 다수(5개사 이상)의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
 - ※ (지원대상 및 규모) 컨소시엄 /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50% 이내, 2.5억원 한도
- (고도화 지원) '20~'24년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도입·활용 중인 우수 솔루션을 대상으로 서비스 확장 등 고도화 비용 지원
 - ※ (지원대상 및 규모) 컨소시엄 /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50% 이내, 1억원 한도
- (코디네이터 지원) 전문성·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활용, DX 수요 기업에 기획-구축-활용 등 도입 전주기 컨설팅 제공 **[붙임1 참조]**

< 스마트서비스 코디네이터 지원 주요내용 >

- (기획단계) DX수준 진단 및 로드맵 제시, 필요기술 컨설팅, 우수 공급기업과의 매칭 지원, 사업계획서 도출 등(2회 내외)
- (구축단계) 사업계획과 부합하는 솔루션 설계 및 개발, 구현 등 구축 초기부터 실제 서비스 적용까지 전반에 대한 컨설팅(2회 내외)
 - ※ 구축단계 컨설팅 중 개인정보보호분야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, 개인정보위원회 주관 「중소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」 컨설팅을 연계하여 제공
- (활용관리)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및 A/S·고도화 지원기획 등(2회 내외)

☞ 코디네이터 지원을 신청한 기업에는 “기획단계” 컨설팅을 기본 제공하며, 최종 지원과제 선정시 구축·활용관리 컨설팅 추가 제공

3. 신청자격 등

- (공통) 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②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

< 컨소시엄 구성 >

- ▷ (도입기업)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중소기업
- ▷ (공급기업) 솔루션 개발·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,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'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'에 스마트서비스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중소기업

■ (필수이행사항) 공급기업 Pool 등록 및 현행화

☞ 신규 공급기업 Pool 등록 절차가 지연(신청 후 검토 및 등록까지 2주정도 소요)될 수 있으므로, 최소 신청마감일 2주 전까지 신청 필요

* (신규등록) '25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급기업의 경우 공급기업 풀 등록 필수

* (현행화) '25년 이전 공급기업 풀 등록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 정보 최신화 필수

[붙임2]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 참고

○ 지원유형별 컨소시엄 구성요건

- (신규 : 단독활용) 도입기업 1개사와 공급기업 1개사로 구성

- (신규 : 공동활용) 5개 이상의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1개사로 구성

< 공동활용 분야 지원 유의사항 >

■ "공동활용" 분야는 '25년 시범운영 사업으로, 다수 도입기업과 1개 공급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입기업이 개별적으로 신청·접수 필요

☞ "공동활용" 분야 사업계획서 양식 내 작성요령 및 접수요령 참고

- (고도화) 도입기업 1개사와 공급기업 1개사로 구성

■ 도입기업의 원활한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급기업 검색기능 제공

- www.smb-service.kr → 사업안내 → 공급기업 검색

* 맞춤형 공급기업 POOL 및 솔루션 개발 분야 등 정보 검색 가능

○ (우대사항) 아래 해당기업은 서면평가지 가점부여

적용범위	가점항목	가점항목	배점
공통	코디네이터 활용 [붙임 1 참조]	○ "스마트서비스 코디네이터 지원" 신청 및 기획단계 컨설팅 완료	2
공동활용	클라우드 활용	○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의 클라우드 보안인증(CSAP)을 보유한 사업자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	3

※ 우대를 통한 가점은 최대 3점까지 적용

○ (지원 제외사항) 접수 마감일 기준 컨소시엄 구성 기업(도입·공급기업) 및 각 기업 대표자 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※ (1)~(4) 도입기업만 해당, (5)~(11) 도입·공급 기업 모두 해당

< 지원제외 대상기업 >

- (1)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신규과제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('20~'24)은 '25년 신규과제 참여 불가(고도화 과제만 참여가능하며, 도입기업 기준 고도화 과제는 1회만 참여가능)
- (2)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(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)
- (3) 스마트제조지원강화사업(舊스마트공방)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(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)
- (4)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
- (5)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/ 유흥·향락업, 주점업
- (6) 부도 및 휴·폐업 중인 기업
- (7)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(8)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·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
- (9)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,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

* [(6)~(9)의 예외 사유]

-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
-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
-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
-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

- (10)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및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경우
- (11)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4. 접수기간 및 방법

□ (신청·접수기간) 2025년 5월 12일(월) ~ 5월 23일(금) 16:00까지

< 신청·접수 유의사항 >

- ① **접수마감일('25.5.23.) 16시 정각에 신청·접수 마감**
- ②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**마감일 1~2일 전에 신청 완료 요망**

□ (신청방법) 온라인 접수

○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(www.smb-service.kr)

구 분	사업관리시스템 접수안내
접수방법	○ www.smb-service.kr → ①회원가입 → ②로그인 → ③사업관리 → ④과제신청 → ⑤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(구비서류) 등록
신청서류	○ www.smb-service.kr → 알림마당 → 사업공고 → "2025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지원사업 공고"
접수 매뉴얼	○ www.smb-service.kr → 알림마당 → 자료실 → "중소기업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과제신청 매뉴얼"

■ 전담-수행기관 공동 사업설명회(25.4월 말 예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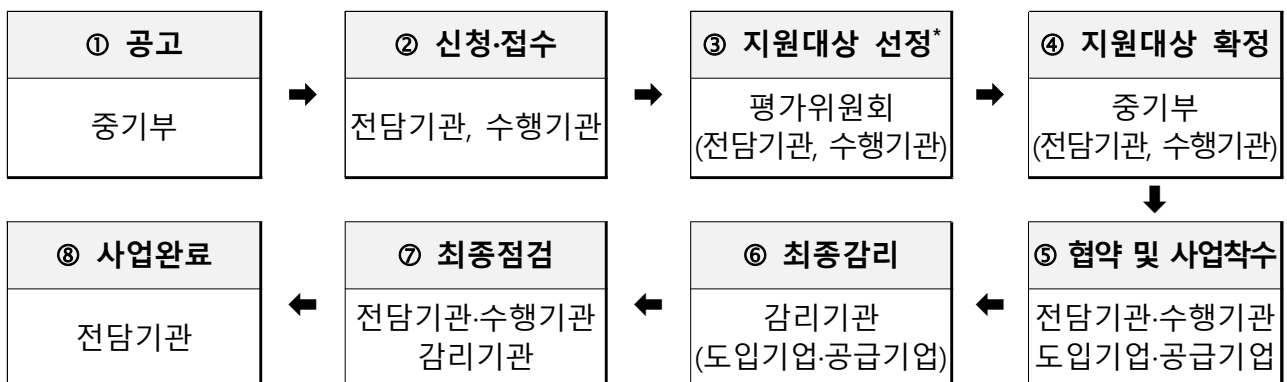
- 세부일정 및 장소 등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별도 공지(<https://www.smb-service.kr>)

5. 제출서류

연번	서 식 명	도입기업	공급기업	관련서식	제출구분
①	사업계획서 1부	○		서식1	필수
②	기업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	○	○	서식2	필수
③	개인(기업)정보 활용동의서	○	○	서식3	필수
④	사업자등록증명원	○	○	서식4	필수
⑤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	○	○	서식5	필수
⑥	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증명원	○	○	서식6	필수
⑦	중소기업확인서	○	○	서식7	필수
⑧	공급기업 투입인력 경력 증빙 서류 (「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」 또는 「학력, 경력 자격 관련 증명서」 등)		○	서식8	필수

* 관련 양식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(www.smb-service.kr)-알림마당-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

6. 지원절차



* 서면평가, 원가검증 및 현장평가

7. 평가방법

- (서면평가)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사업 필요성,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, 성공 가능성 등을 평가
 - ※ 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배정예산 및 지원 목표과제 수를 감안하여 원가검증 및 현장평가 대상과제 선정
- (원가검증) 사업계획서 상의 투입원가(인력, 장비, 시설 등)를 산출하여 예산 집행계획의 경제성, 타당성을 검토
- (현장평가)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 추진 타당성 여부, 도입기업의 추진 의지 및 역량, 기대효과 등을 평가

8. 기타사항

- 반드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하며, 접수 완료 후 서류보완은 불가함
- 신청기업(컨소시엄)은 제출서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또는 추가 자료 제출·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해당 요구에 불응할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음
- 신청서 작성 오류 및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(컨소시엄)에 있음
- 본 사업에 선정된 경우, 스마트서비스 코디네이터 지원(구축 및 활용단계)을 필수 연계하여야 함
- 본 사업에 선정된 경우, 필요시 전담·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 수행 관련 교육에 필수적으로 참석하여야 함
- 최종 선정 도입기업은 본 사업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솔루션의 데이터 수집·분석·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

9. 문의처

담당기관		문의사항	연락처
사업총괄	중소벤처기업부	사업계획 수립	국번없이 1357
전담기관	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	공고 및 신청·접수	국번없이 1357 (smartservice@tipa.or.kr)
수행기관	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	신청·접수 코디네이터 지원관련	02-369-0994, 0997 (smartservice119@wbiz.or.kr)
	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(이노비즈)		031-628-9694, 9660 (smartcs@innobiz.or.kr)
	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(메인비즈)		02-2230-2161, 2164, 2179 (smart@mainbiz.or.kr)
	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		02-2088-8965, 8236 (korsca_svc@korsca.kr)
시스템	사업관리시스템 지원	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·접수 등	www.smb-service.kr ("1:1문의" 게시판)

- (지원목적)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활용, DX 수요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여 서비스분야 중소기업의 DX 편의 제고
- (지원대상 및 내용)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도입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기획-구축-활용 등 전주기에 전문가의 1:1 컨설팅 지원(총 6회 내외)

< 단계 별 스마트서비스 코디네이터 지원내용 >

- (기획단계) DX수준 진단 및 로드맵 제시, 필요기술 컨설팅, 우수 공급기업과의 매칭 지원, 사업계획서 도출 등(2회 내외)
- (구축단계) 사업계획과 부합하는 솔루션 설계 및 개발, 구현 등 구축 초기부터 실제 서비스 적용까지 전반에 대한 컨설팅(2회 내외)
 ※ 구축단계 컨설팅 중 개인정보보호분야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, 개인정보위원회 주관 「중소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」 컨설팅 연계 제공(예정)
- (활용단계)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및 A/S·고도화 지원기획 등(2회 내외)

- (지원방식) 최초 사업기획 단계에서 매칭된 코디네이터를 솔루션 구축·운영 등 이후 단계까지 연계하여 컨설팅의 연속성·효과성 제고
 - 코디네이터 지원을 신청한 기업에는 “기획단계” 컨설팅을 기본 제공하며, 기획단계 컨설팅 완료기업은 서면평가 우대(가점 2점)
 - 기획단계 컨설팅을 완료한 기업이 신규 또는 고도화 지원에 최종 선정되어 과제 진행시, 구축단계 및 활용단계 컨설팅 추가 제공
 - 기획단계 컨설팅을 완료한 기업이 신규 또는 고도화 지원에 탈락한 경우, 코디네이터 지원은 기획단계 컨설팅으로 종료

□ (신청기간) 2025년 4월 3일(목)부터 4월 18일(금) 16:00까지

- (신청방법) 컨설팅을 희망하는 수행기관에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
 - ※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일정은 수행기관에서 별도 안내(수행기관 이메일은 공고문의 9번 문의처 참조)
 - ※ 신청서 양식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(www.smb-service.kr)-알림마당-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

- (자격요건) 빅데이터, 인공지능(AI) 등 정보통신기술(ICT) 솔루션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

○ 아래의 기업은 공급기업 등록 제한

※ (등록제한) 등록기간 마감일 기준 아래의 요건 ((1)~(6))에 해당하지 않아야 신청가능

- (1)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,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
- (2) 국세·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- (3)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·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
- (4)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,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
- (5)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및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 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경우
- (6)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* [(1)~(4)의 예외 사유]

-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
-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
-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
-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

- (등록 기간) 상시

- 신규 공급기업 Pool 등록 절차가 지연(신청 후 검토 및 등록까지 2주정도 소요)될 수 있으므로, 최소 신청마감일 2주 전까지 신청 필요

* '25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급기업의 경우 공급기업 풀 신규 등록 필수

- (등록내용 및 방법) 공급기업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자사 해당하는 전문·특화업종을 선택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

* 「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」에서 공급기업 Pool 승인시 스마트서비스 공급기업 Pool로 자동 연계

-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입력정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전담기관에서 승인 예정 (3~7일 소요)

□ (신청방법) 스마트서비스 사업관리시스템(smb-service.kr)과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에서 회원가입 및 신청

<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급기업 POOL 신청순서 >

(1단계) 스마트서비스 사업관리시스템	주소	관련내용
	smb-service.kr	① 회원가입 (기업, 참여인력 모두) - 기업회원(대표자) : 기관 신규 등록 - 개인회원 : 참여인력 : 소속(재직)
↓		↓
(2단계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	주소	관련내용
	smart-factory.kr	① 회원가입 (기업, 참여인력 모두) - 기업회원(대표자) : 기관 신규 등록 - 개인회원 : 참여인력 : 소속(재직) 공급기업 ② 권한신청 ③ 공급기업 POOL 신청
↓		↓
(3단계) 전담기관 승인 및 Pool 등록 완료	주소	관련내용
	-	① (전담기관)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공급기업 Pool 등록신청 승인 ②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전담기관이 공급기업 Pool 승인시 스마트서비스 공급기업 Pool로 자동 연계

□ 제출서류

구 분	제출서류
공통	① 서약서 ②기업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③ 정보활용동의서
기업	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③ 최근3개년(2021년~2023년) 재무제표증명원 ④ 중소기업확인서
인력	①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② SW·엔지니어링 관련 자격증 ③ 소프트웨어기술자 및 기업 경력증명서 ④ 그 외 경력증빙에 필요한 서류
실적	① 스마트서비스 실적 협약서 및 증빙서류 등

□ 문의처

담당기관(부서)		문의사항	연락처
전담 기관	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(제조AX사업실)	공급기업등록 승인	smartservice@tipa.or.kr
시스템	사업관리시스템 지원	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등록 등 시스템 관련 문의	www.smb-service.kr

□ 유의사항

1. 스마트서비스 사업관리시스템과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연계시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동일 사업자번호 여부를 판별하여 연계를 진행합니다.
 - 스마트서비스 사업관리시스템과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시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스마트서비스 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, 스마트공장 통합 공급기업 Pool 신청이 불가합니다.
 - ⇒ 반드시 스마트서비스 사업관리시스템(smb-service.kr)에서 회원가입 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회원가입 및 공급기업 Pool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공급기업 Pool 승인 된 경우에는 공급기업 등록 제한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한, 승인상태로 유지되며 매년 공급기업 POOL 신청을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.
 - 단, 인력 등 기업정보 변경시 주기적으로 공급기업 POOL 정보를 갱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사업 지원시 요건검토를 통해 공급기업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 할 경우, 공급기업 Pool 승인이 취소되어 본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.